

의안번호	2200895
의 퇴 인	임오경의원
회 답 일	2024. 7. 25.
추 계 번호	24C1270

한류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한류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한류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600만원, 2030년 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2,000만원 (연평균 2,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한류정책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90	—	—	—	—	90	18
한류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6	6	6	6	6	30	6
합 계	96	6	6	6	6	120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한류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류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한류정책의 분야별 추진방향과 추진시책, 한류콘텐츠의 발전방향과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 한류연관산업의 발전방향과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한류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8조(한류정책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류콘텐츠와 한류연관산업 등 한류정책의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0조(한류정책심의위원회)	정부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 등 한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함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한류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의무규정
4	안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2조(연구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해외콘텐츠 시장의 동향과 한류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한류연관산업 수출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3조(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 및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한류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과 마케팅 지원 등 한류콘텐츠 수출을 지원하여야 함	
8	안 제15조(한류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7조(한류관련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류관련 신산업·기술 창업분야 유망 창업기업등의 공동 발굴·육성, 한류관련 신산업·기술 창업기업과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간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교류·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한류관련 사업의 공모·제안, 공동마케팅 등 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8조(한류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9조(한류사업자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촉진, 한류사업자의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20조(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한류 확산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문화자산을 한류콘텐츠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21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연관산업의 발전 및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한류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2	안 제8조(한류정책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3	안 제10조(한류정책심의위원회)	○	
4	안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5	안 제12조(연구개발의 촉진)		
6	안 제13조(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안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8	안 제15조(한류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9	안 제1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10	안 제17조(한류관련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11	안 제18조(한류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 특례)	×	-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12	안 제19조(한류사업자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13	안 제20조(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한류 확산 지원)	×	-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14	안 제21조(조세의 감면 등)	×	- 감면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조세감면 대상·비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8조(한류정책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	해외한류실태조사 시행(3.6억원)
안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한류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양성(20억원)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13.6억원)
안 제12조(연구개발의 촉진)	해외통신원 운영(1.9억원) 한류콘텐츠 해외동향 분석, 한류백서 등 연구와 정보제공(6.3억원)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맞춤형 해외 심층정보 제공(15억원)
안 제13조(한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콘텐츠수출마케팅 플랫폼 이용 고도화(30.5억원)
안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교류 활성화(16억원) 한류 문화교류 사업(31.4억원) 관계부처 해외홍보관 운영(110억)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45억)
안 제15조(한류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 지원 (25.7억원)
안 제17조(한류관련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지원(39억원) 관계부처 한류 박람회 개최(70억원)
안 제19조(한류사업자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한류기업 해외 진출 종합컨설팅 지원(52.5억원) 한류기업 해외거점 운영(219억원) 한류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8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안 제16조), 한류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 등 특례(안 제18조),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한류 확산 지원(안 제20조), 조세의 감면(안 제21조)은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및 조세의 감면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한류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안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한류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
- 한류정책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한류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3] 한류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한류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90	-	-	-	-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한류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한류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장소 임차료나 지원인력 등 부대경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한류정책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당

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13명의 공무원으로 규정한 제정안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수는 6명으로 가정

- 회의 횟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¹⁾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한류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6명 위촉하여 매년 4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연간 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6명 \times 4회 \times 250,000원 = 6,000,000원$

[표 4] 한류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한류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6	6	6	6	6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우병혁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병혁	02-6788-3739	wbhcd@assembly.go.kr